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2
------	------

2021. 6. 1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5월 1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6.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황보연)

1. 제안이유

- 주택공급, 1인가구 및 청년지원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수·조교 및 시의회사무처 인력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의 총 정원을 18,944명에서 19,027명으로 83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폐지 감원(3급 △1명)
- 나. 기존 조직 기능조정·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총 4급기구 개수 4개 증가(4급 +4명)
- 다. 주택공급·균형발전, 도시계획,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급이하 +52명)
- 라.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신설, 특별 교육수요 증가, 학생행정 운영 등을 위해 전임교수 및 조교 증원(전임교수 +15명, 조교 +6명)
- 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 등 시의회사무처 정원 증원(5급이하 +6명)
- 바.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74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합의제)를 재편하여 ‘시민협력국’ (본청) 신설 등
 - ▶ (합의제)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 (본 청)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 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증원(+9명)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고압전기안전관리 다군 +1
 - (서울대공원 8) 동물관리요원 나군 △1, 동물사육 나군 +5, 동물박제 나군 +1, 동물사육 다군+3
 - ▶ 서울대공원은 관리운영직 및 임기제 퇴직자 등 정원 상계조정(일반직 △8명)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3.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새로운 시정 핵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등에 필요한 인력인 83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수를 19,027명으로 하고자 제출되었음.
- 세부내용은 ▶ 지역발전본부 폐지 3급 1명 감원 ▶ 주택공급·균형발전, 1인 가구와 청년 지원, 4차 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4급 4명, 5급 이하 52명 증원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수 15명과 조교 6명 증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6명 증원 ▶ 행정기구 신설과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74명 정원 이체 ▶ 암사아리수 정수센터와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9명 증원임.

< 정원 조정 내용 >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18,944	4	10,564	7	24	19	5	249	10	10,141	109	37	403	24	7,389	3	520	
19,027 (+83)	4	10,626 (+62)	7	24	18 (△1)	5	253 (+4)	10	10,191 (+50)	118 (+9)	37	403	24	7,389	3	541 (+21)	

나. 분야별 인력증원에 대한 검토

(1) 지역발전본부 폐지(감원 3급 1명)

- 지역균형발전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통합적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실(1급)과 지역발전본부(3급)를 통·폐합해 균형발전본부(2·3급)를 신설함에 따라 3급 1명을 감원하고 있음.
- 2016년부터 한시기구로 설치된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을 4개 권역(동남·동북·서남·서북)별로 나누어 산업경제 기반형 거점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해 왔음.
- 그동안 5차례의 연장을 통해 지역발전본부를 존속해 왔으나,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한시기구를 정규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기구 존치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간 존속기한의 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음.

- 한편 한시기구 외에 법령과 조례의 근거없이 운영되는 3급 이상 임시기구 4개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 기구와 통·폐합 등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서울시는 국제협력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주택기획관 등 4개의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협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폐지될 예정임.

(2) 기능조정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증원 4급 4명)

- 서울시는 기존 조직의 수요 감소와 유사·중복 부서에 대한 기능 조정 및 재배치와 함께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청에서 26개 과가 신설되고 18개 과가 폐지되며,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4개 과가 폐지되면서 전체적으로 4급 정원이 4명 증원 되었음.

< 4급 기구 폐지 및 신설 현황 >

폐지부서	계	신설부서	계	비고
	22		26	+4
사회혁신담당관,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3	시민참여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 시민숙의예산과	5	△2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4	지역공동체과		
투자창업과, 지역상생경제과	2	창업정책과, 제조산업혁신과 전략산업기반과, 바이오산업과, 금융투자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6	+4
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2	주택정책지원센터, 전략사업과 공동주택지원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공간기획과	5	+3
		도시계획지원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	2	+2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청년청	2			△2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2	서부권사업과	1	△1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	5	균형발전정책과, 주거환경과 도심권사업과, 한옥정책과	4	△1
제로페이담당관	1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1	-
택시물류과	1	택시정책과, 물류정책과,	2	+1

- 주요 증가요인은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의 격상·확대(+4)와 주택정책실의 부서 신설(+3) 등에 있음.
- 경제정책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거점성장추진단(3·4급)을 신성장산업기획관(3급)으로 격상·확대되고, 소속 부서 역시 4급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4급 정원이 4명 증원되었음.
- 주택정책실(1급)은 주택정책본부(2·3급)가 격상·확대되면서 주택정책지원센터, 전략사업과가 신설되었음.

- 그러나 주택정책실은 행정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인 4개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4급 부서(주택정책지원센터, 주택공급과)가 발생하고 있고¹⁾, 불명확한 사무 영역과 적정 업무량 확보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3) 시정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증원 5급 이하 52명)

- 시정 핵심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핵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구신설과 기능조정 등으로 5급 이하 52명을 증원하고 있음.

< 실·본부·국별 5급 이하 증원 내역 >

연번	실·본부·국	부서	주요업무	계	요청직급
				+52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 경제정책 수립 총괄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 분석	+5	행정7급 +1
2		창업정책과 (신설)	창업성장위원회 운영 및 창업시설 권역별 집적관리		행정7급 +1
3		금융투자과 (신설)	여의도 금융허브 구축 및 핀테크 산업육성 강화		행정7급 +1
4		미디어콘텐츠 산업과(신설)	DMC활성화 및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행정6급 +1, 행정7급 +1
5	주택정책실 (신설)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중장기 시설개선 및 장기수선계획 관리	+12	건축6급 +1
6		주택정책지원센터 (신설)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주택 관련 통계자료 분석		행정5급 +1 ㉠행정5급 +1, 행정·시설6급 +1
7		전략사업과 (신설)	상생·모아주택 핵심주택 사업 중점 추진 및 역세권공공주택활성화		토목7급 +1
8		공공주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토목6급 +1
9		공동주택지원과 (명칭변경)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재건축사업 추진		건축6급 +2
10		주거정비과	공공재개발사업 총괄 및 투기방지대책 수립		건축6급 +1, 토목6급+1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항

연번	실·본부·국	부서	주요업무	계	요청직급
11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술 및 건축허가 전문적 검토		㉞건축6급 +2
12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신설)		1인가구 지원정책 총괄 및 실태조사·신규사업발굴	+22	행정5급 +5, 건축5급 +1, 행정6급 +6, 건축6급 +2, 보건6급 +1, 행정7급 +5, 사회복지7급 +1, 건축7급 +1
1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지원과	도시계획 상정안건 전문적 검토 및 심의결과 분석	+3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14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시설관리팀 기능 강화	+1	행정5급 +1
15	은평병원		감염관리·간호교육 전담부서 간호2과 신설	+1	간호5급 +1
1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교육플랫폼추진반,신설)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화상교육시스템 구축	+5	행정6급 +1, 전산6급 +1, 행정7급 +3,
17	미래청년기획단 (신설)		청년안심수당 운영 및 청년자립 지원 정책 강화	+3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 조직 확대에 따른 증원은 중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하므로 신설 조직의 적정성과 행정 수요, 업무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개정안의 증원은 대부분 신입 시장의 핵심과제와 역점사업인 1인가구 대책 추진과 주택공급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분한 사업 수요나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주택정책실(주택정책지원센터, 전략사업과 등)은 긴급한 사업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부서를 신설해 과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더욱이, 조직개편안이 긴급하게 제출되면서 핵심사업과 신설 부서의 사업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므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통해 불요 불급한 증원 요구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서울시립대 교원 증원(증원 21명)

- 시립대의 전공교육 강화와 교원 확보율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 15명을 보강하고, 학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교 6명을 배치하고자 총 21명의 증원을 반영하고 있음.

< 시립대 증원 요청 내용 >

교원	학과	요청	요청 사유
총 계		21	
전임교원	스마트시티학과	1	신설학과 증원
	인공지능학과	2	
	응용융합화학과	2	
	스포츠과학과	1	교원확보율 75% 이하
	공간정보공학과	1	
	방재공학과	1	
	도시보건·도시빅데이터	2	특별 교육수요 충족
	산학협력단	5	산학협력분야 인력 보강
조교	단과대학	3	미배치·부족인원 보강
	대학원	2	
	대학본부	1	

- 전임교원의 증원은 첨단학문분야 신설학과와 새로운 교육수요, 교원확보율이 낮은 분야, 산학협력중점 교수에서 발생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을 위한 전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신설 학과인 스마트시티학과(2019), 인공지능학과(2020), 응용융합화학학과(2020)에서 총 5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할 계획임.
- 학과별 자체 수요 조사 결과와 교육부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75% 이하)이 낮은 스포츠학과, 공간정보공학과, 방재공학과에 각각 1명씩 3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음.
- 대학교육 발전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보건의료와 도시빅데이터 분야에 각각 1명씩 2명을 증원할 예정임.
- 산학협력단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체 등의 현장 경험을 가진 산학협력 중점교수 5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²⁾.
- 현재 시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원기준 88.5%로, 전국 주요 국립대학 평균 94.7%보다 6.2%p가 낮고, 전임교원 강의비율도 52.9%로 국립대학 평균 62.6% 보다 낮은 상황임.

2) 증원 분야 : 디지털 신기술, 미래도시교통, 도시정책,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 신산업

< 시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

(단위 : 명, %)

대학별	학 생 편제정원(A)	교 육 부 법정정원(B)	교원현원 (C)	교원1인당 학생수(A/C)	교원확보율 (C/B×100)
서울시립대	10,695	486	430	24.9	88.5
국립대(평균)	19,750	1,000	972.5	21.7	94.7
서울대	30,746	1,656	2,256	13.6	136.2
충남대	21,553	1,089	990	21.8	90.9
경북대	28,129	1,432	1,348	20.9	94.1
전북대	21,377	1,085	1,054	20.3	97.1
제주대	11,451	562	636	18.0	113.2

※ 출처 : 2020년 기준 대학정보공시

-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타 대학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적정 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조한 교원확보율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충원에 대한 중기인력계획이 마련 되어야 함.
- 한편, 시립대는 전임교원의 정원을 확대해도 인력충원이 학과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확보한 정원 내에서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전방위 적인 노력이 요구됨.

< 시립대 전임교원 현황 >

(2021.3.1.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정 원	450	201	57	161	31
현 원	437	194	57	156	30

- 그 밖에 개정안은 교육·연구 지원과 학사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교가 배치되지 않거나 학생수 대비 조교가 부족한 본부와 대학원에 6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시립대는 조교 1인당 학생수가 155명으로, 국·공립대 전체 평균 122.6명에 비해 과다한 편이므로 개정안의 조교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증원 6명)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인사권 독립 준비,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6명을 증원하고 있음.
- 증원 내용은 인사권 독립 준비 4명(행정5급 1명·전산6급 1명·행정7급 2명),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임기6급 1명,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방송통신 6급 1명임.

< 의회 사무처 증원 요청 내용 >

부서명	직무 내용	요청	요청 직급
총 계		6	
의정담당관	인사팀 신설 및 독립적 인사제도 운영기반 마련	4	행정 5급 1, 전산 6급 1, 행정 7급 2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1	임기제 6급 1
의사담당관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및 보안 강화	1	방송통신 6급 1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법·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인력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이관(정원 이체 74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된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에서 타 부서와 기능의 유사·중복, 낮은 행정수요 등으로 국 단위 기구로의 운영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음.³⁾

3)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위원회(21.3.26 개최)의 평가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2·3급)를 서울혁신기획관(3급)과 통합 재편하고 시민협력국(2·3급)을 신설할 계획임.
- 이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등 총 74명을 업무이관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이체하게 되었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업무는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계량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업구조가 대부분임.
- 단편적인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재편하는 것은 시민참여와 협치 강화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와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7)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조정(증원 9명)

-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노후화된 수전설비와 넓은 관리 범위를 개선하고자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고압전기안전관리 전문경력관⁴⁾ 다군 1명을 증원하고 있음.

는 기존 부서와 기능 중복, 낮은 효과성을 이유로 61.1점을 받아 폐지 기준에 해당함.

4) 전문경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업무분야에서 계급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암사정수센터의 특성상, 추가로 진행 중인 수전설비에 별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타 센터에 비해 고압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시설물 수량이 많아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정수센터별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업무량 비교 >

(’21. 3월 기준)

사업소	시설구분	계약용량(kW)	수전전압(kV)	배전반(면)
광암	정수장	1,500	22.9	86
구의	정수장	10,147	22.9	131
뚝도	취수장	5,093	22.9	31
	정수장	12,000	22.9	56
영등포	취수장	3,373	22.9	27
	1·2정수장	11,919	22.9	209
암사	취수장, 1·2정수장	27,841	154	382
강북	강북취수장	6,000	22.9	47
	뚝도취수장 구의취수장	12,000	22.9	60
	정수장	15,000	154	241

- 서울동물원은 동물사육 분야의 전문경력관 나군 5명, 다군 3명과 함께 동물박제분야의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고 있음.

- 이에 필요한 정원은 기존의 관리운영직(사육운영) 7급 3명, 임기제 (농업) 8급 4명, 전문경력관(동물관리요원) 1명, 장기결원 정원(임기제 농업9급) 1명 등을 상계 조정하여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음.

및 직군·직렬 구분없이 한 직위에 계속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함(「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 서울시는 공무원 직군의 단순화와 임기제공무원의 신분 안정을 위해 관리운영직군인 사육운영직과 임기제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 있음.
- 동물사육과 같은 특수 분야의 업무에 전문경력관을 충원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 인건비의 증감

- 2021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1조 8,490억원으로 기준인건비 1조 8,798억원 대비 308억원의 여유가 있으며, 개정안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액 154억원(기존 117억원+개정안 증액분 37억원)을 감안하면 154억원의 여유가 예상됨.
 - 개정안 통과 후 증원 시점을 2021년 7월로 예정할 경우 83명 증원에 관한 인건비 추가 예상액은 2021년 인건비 일반직 기준단가(연봉 90,042천원)에 5개월 분을 산정하면 37억원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13명, 9명 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2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주택공급, 1인가구 및 청년지원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수·조교 및 시의회사무처 인력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의 총 정원을 18,944명에서 19,027명으로 83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폐지 감원(3급 △1명)
- 나. 기존 조직 기능조정·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총 4급기구 개수 4개 증가(4급 +4명)
- 다. 주택공급·균형발전, 도시계획,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급이하 +52명)
- 라.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신설, 특별 교육수요 증가, 학생행정 운영 등을 위해 전임교수 및 조교 증원(전임교수 +15명, 조교 +6명)
- 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 등 시의회사무처 정원 증원(5급이하 +6명)
- 바.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74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합의제)를 재편하여 ‘시민협력국’(본청) 신설 등
 - ▶ (합의제)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 (본 청) 2·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9명

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증원(+9명)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고압전기안전관리 다군 +1

- (서울대공원 8) 동물관리요원 나군 △1, 동물사육 나군 +5, 동물박제 나군 +1, 동물사육 다군+3

▶ 서울대공원은 관리운영직 및 임기제 퇴직자 등 정원 상계조정(일반직 △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5. 7.~5. 11, 5. 12.~5. 13.) 결과: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부서단위 조직 신설 의견제출에 대해 정원 조정(반영)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944명”을 “19,0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04명”을 “10,53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20명”을 “5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50명”을 “35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78명”을 “204명”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635	
-----	--------	--

같은 표의 일반직 계란, 2·3급란,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26	
-------	--------	--

2·3급	24	19		1	3	1
------	----	----	--	---	---	---

3급	18	9		1	8	
----	----	---	--	---	---	--

4급	253	155	17	8	66	7
----	-----	-----	----	---	----	---

5급 이하 소계	10,191					
----------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118					
----------	-----	--	--	--	--	--

같은 표의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 등란,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41					
---------	-----	--	--	--	--	--

교수 등	465			465		
------	-----	--	--	-----	--	--

조교	75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u>18,944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404명</u></p> <p>2. (생략)</p> <p>3.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u>520명</u></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350명</u></p> <p>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u>278명</u></p> <p>6. (생략)</p>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9,027명</u> ----- -----.</p> <p>1. ----- ----- ----- <u>10,534명</u>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541명</u> -----</p> <p>4. ----- <u>356명</u> -----</p> <p>5. ----- <u>204명</u> -----</p> <p>6. (현행과 같음)</p> <p>[별표 4]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회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55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56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4</td> <td>18</td> <td></td> <td>1</td> <td>3</td> <td>2</td> </tr> <tr> <td>3급</td> <td>19</td> <td>10</td> <td></td> <td>1</td> <td>8</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49</td> <td>147</td> <td>17</td> <td>8</td> <td>66</td> <td>11</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14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0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계</td> <td>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상당</td> <td>5</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회행정기관	총계	11,55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564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19	10		1	8		3·4급	5	5					4급	249	147	17	8	66	11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41						전문경력관 소계	10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회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63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62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4</td> <td>19</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8</td> <td>9</td> <td></td> <td>1</td> <td>8</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53</td> <td>155</td> <td>17</td> <td>8</td> <td>66</td> <td>7</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19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1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계</td> <td>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상당</td> <td>5</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회행정기관	총계	11,635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626						1급	7	6	1				2·3급	24	19		1	3	1	3급	18	9		1	8		3·4급	5	5					4급	253	155	17	8	66	7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91						전문경력관 소계	118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회행정기관																																																																																																																																																																																																																																																							
총계	11,55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564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19	10		1	8																																																																																																																																																																																																																																																								
3·4급	5	5																																																																																																																																																																																																																																																											
4급	249	147	17	8	66	11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41																																																																																																																																																																																																																																																												
전문경력관 소계	10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회행정기관																																																																																																																																																																																																																																																							
총계	11,635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626																																																																																																																																																																																																																																																												
1급	7	6	1																																																																																																																																																																																																																																																										
2·3급	24	19		1	3	1																																																																																																																																																																																																																																																							
3급	18	9		1	8																																																																																																																																																																																																																																																								
3·4급	5	5																																																																																																																																																																																																																																																											
4급	253	155	17	8	66	7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91																																																																																																																																																																																																																																																												
전문경력관 소계	118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현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5급상당 이하 소계	3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403						연구직 계	403					
연구관	62	4		34	24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41						연구사	341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20						교육공무원 계	541					
총장	1			1			총장	1			1		
교수 등	450			450			교수 등	465			465		
조교	69						조교	7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8,944명에서 19,027명으로 총 83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3급 △1, 4급 +4, 5급 +13, 6급 +26, 7급 +17, 8급 +△5, 9급 △1, 전문경력관 나군 +5, 전문경력관 다군 +4, 교수 +15, 조교 +6)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연도						
	구분						
세입							
	소계(a)						
세출	인건비	3,123,564	6,390,812	6,537,801	6,688,170	6,841,998	29,582,345
	소계(b)	3,123,564	6,390,812	6,537,801	6,688,170	6,841,998	29,582,345
□ 총 비용(a-b)		3,123,564	6,390,812	6,537,801	6,688,170	6,841,998	29,582,345

※ 매년 인건비 상승률 2.3%('21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 6개월분으로 비용추계[정원배정 시기 : '21.7월(예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연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123,564	6,390,812	6,537,801	6,688,170	6,841,998	29,582,345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123,564	6,390,812	6,537,801	6,688,170	6,841,998	29,582,345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철묵(02-2133-67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83명

○ 일반직공무원 : +62명

- 3급 △1, 4급 +4, 5급 +13, 6급 +26, 7급 +17, 8급 △5, 9급 △1, 전문경력관 나군 +5,
전문경력관 다군 +4

○ 교육공무원 : +21명

- 교수 +15, 조교 +6

2. 비용소요 추계 : 6,247,12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6,247,128	<p>◆ 총 계 : +6,247,128</p> <p>○ 일반직(+62명) : +4,970,034</p> <p>▷ 3급(△1) : 110,622 × △1명 = - 110,622</p> <p>▷ 4급(+4) : 102,597 × 4명 = 410,388</p> <p>▷ 5급(+13) : 94,000 × 13명 = 1,222,000</p> <p>▷ 6급(+26) : 74,111 × 26명 = 1,926,886</p> <p>▷ 7급(+17) : 63,155 × 17명 = 1,073,635</p> <p>▷ 8급(△5) : 46,181 × △5명 = - 230,905</p> <p>▷ 9급(△1) : 38,531 × △1명 = - 38,531</p> <p>▷ 전문경력관 나군(+5) : 86,143 × 5명 = 430,715</p> <p>▷ 전문경력관 다군(+4) : 71,617 × 4명 = 286,468</p> <p>○ 교육공무원(+21명) : +1,277,094</p> <p>▷ 교수(+15) : 66,010 × 15명 = 990,150</p> <p>▷ 조교(+6) : 47,824 × 6명 = 286,944</p>	'21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